

공 고**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-836호****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**

1. 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0호(2009.05.28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55호 (2009.09.04)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된 종로구 서린동 64-1번지 일대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계획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09년 12월 11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09. 12. 11. ~ 2009. 12. 25(14일)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731-1422)

다.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(안)

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- 2) 사업의 명칭 :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
- 3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2012. 2
- 4)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구 역 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비기반시설(㎡)
서린구역 주차장	종로구 서린동 64-1번지 외 10필지	1,070.6	1,070.6	-

- 5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(경쟁력정책담당관)
 -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
- 6) 건축계획

위 치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높이(m) (지상/지하)	주용도
종로구 서린동 64-1번지 외 10필지	1,070.6	59.66	788.51	11,751.62	80.5 (15/4)	공공청사 및 문화시설, 주차장

- 7)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
 - 해당없음
- 8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·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
 - 해당없음
- 9)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731-1422). 끝.